

##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3차(10~12월) 정산(반환) 안내

< 비축물자관리과, '25.1.6.(월) >

### □ 추진 경과

-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사전 안내('24.4.19.)
-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1차(5~6월) 환수금액 정산('24.9월)
-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2차(7~9월) 환수금액 정산('24.12월)

### □ 안내 및 협조 사항

- (기간) 2024.10.1. ~ 2024.12.31.(3개월 분)
- (대상)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(조제·투여기관)
- (금액) 입력 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(13-1 판, 11.27.시행) 준수
  - (10.1 ~ 10.24) 경구용/주사용 치료제 구분없이 유상 사용량 1명분당 49,000원
  - (10.25.이후) ① 경구용 치료제(팍스+라게) 유상 사용량 1개당 46,090원 (1명분 기준, 30정 5일치) ※ 인센티브 1,000원 제외
  - ② 주사용 치료제(베클) 유상 사용량 1병당 8,160원/1vial ※ 인센티브 160원 제외
- (절차) ① 담당기관 별 치료제 사용량 현황화(재고관리시스템 내 유상 사용량) → ② 반환금액 목록 작성(질병청) → ③ 반환금액 목록 검증(건보공단) 및 이의신청(담당기관) → ④ 반환금액 확정 및 통보(질병청) → ⑤ 정산 및 반납(건보공단) → ⑥ 국고환수(질병청)
- (협조사항)
  - (시도 및 시군구) 담당기관(조제·투여기관)에 시스템 현황화 반드시 안내
  - (담당기관) 재고관리시스템 내 유상 사용량 현황화\* (~1.22.)
    - \* 해당 기관 내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관련 부서(약제부, 심사부 등)
    - \*\* 무상지원 대상자는 비교에 사용량 및 처방전 날짜, 구분(무상), 교부번호 작성 必
- ☞ 1월 23일 09시 기준으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치료제별 본인부담금 기준인원 추출 예정(이후 개별기관에서 수정하여도 반영 불가)

### □ 향후 일정 [\* 변동 가능]

- 시스템 현행화(~1.22.) 및 본인부담금 반환금액 목록 작성(~2.7.)
- 정산 금액 검증(확인) 및 이의신청 접수(2.10~2.21.), 심사·반영(~2.26.)
- 정산 금액 확정 통보 및 3차 정산 완료(3월 중)

**참고 1** 재고관리시스템 입력 관련 안내(\*본인부담금 업무 담당자 필독)

□ **[~10.24.]시스템 내 무상/유상 사용량 입력안내**

○ 반드시 무상, 유상 사용량 구분하여 입력(사용량은 자동합계)

- 무상 사용량의 경우 반드시 비교에 환자정보\* 입력

\* 처방전날짜 / 무상 / 환자 성 / 요양기관번호 / 교부번호 기재

\*\* 예시: (9.10./무상/홍00/12345678/0000)

사용량	무상사용량	유상사용량	본인부담금 기준인원(명)	재고량	수요량	결정량	비고(작성요령 참고, 줄 바꾸기(Shift+Enter))
1	0	1	1	24	0	0	
2	1	1	1	15	0	0	유상1명(1병) 24.09.19/무상/이**/21282421/1/1병)

- 유상 사용량의 경우 비교에 유상0명(0병)\* 입력(특히 베클루리주 必)

\* 예시: 유상2명(8병) 또는 유상2명(4병/4병)

사용량	무상사용량	유상사용량	본인부담금 기준인원(명)	재고량	수요량	결정량	비고(작성요령 참고, 줄 바꾸기(Shift+Enter))
22	6	16	3	166	0	0	유상3명(16병) 무상(240918)무상/김/31100252/A327/6)

- 베클루리주의 경우 투여 마지막날 총 사용량 및 본인부담금 기준인원 입력

\* (예시) 9.1.~9.5. 유상환자에게 총 6병 투여

→ 기준일 9.5.자로 유상사용량 6, 본인부담금 기준인원(명) 1 입력

**※ 베클루리주 처방 시작일자가 10월 24일 23:59 이전이고 투여 종료일자가 10월 25일 0시 이후인 경우 기존 사람 기준으로 부과 예정(사용량에 상관없이 49,000원 부과)**

□ **[10.25.~]시스템 내 무상/유상 사용량 입력안내**

○ 반드시 무상, 유상 사용량 구분하여 입력(사용량은 자동합계)

- 무상 사용량의 경우 반드시 비교에 환자정보\* 입력

\* 처방전날짜 / 무상 / 환자 성 / 요양기관번호 / 교부번호 기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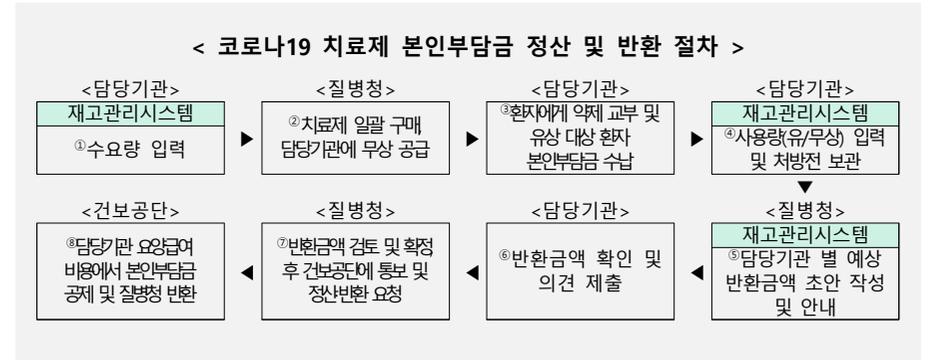
\*\* 예시: (9.10./무상/홍00/12345678/0000)

사용량	무상사용량	유상사용량	본인부담금 기준인원(명)	재고량	수요량	결정량	비고(작성요령 참고, 줄 바꾸기(Shift+Enter))
1	0	1	1	24	0	0	
2	1	1	1	15	0	0	유상1명(1병) 24.09.19/무상/이**/21282421/1/1병)

- 유상 사용량은 기존 본인부담금 기준인원이 아닌 **사용량(개병) 기준으로 산출(특히 베클루리주 유의)할 예정으로 당일 유상사용량 입력**

**참고 2** 코로나19 본인부담금 정산 및 반환 세부절차

□ 정산 및 반환 세부 절차



① 코로나19 치료제를 조제·투약하는 의료기관·약국(담당기관)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수령

② 국민건강보험공단(건보공단)이 담당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정산·공제 후 담당기관에 지급

※ 본인부담금 반환금액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지급내역서 상 지급구분을 '채권(양도, 압류 등)'으로 기재하여 공제예정, 공제절차로 인해 요양급여 지급일자 +1일(주말, 휴일 제외)에 실지급 예정(참고3)

③ 건보공단에서 공제한 금액을 질병청으로 반환

④ 반환금 국고 납부

**참고 3** 본인부담금 반환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

직인생략

**[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반환 관련 안내]**

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질병관리청에서 무상 지원한 코로나19 치료제 3종(먹는치료제: 파스로비드, 라게브리오, 주사용 치료제: 베클루리주)에 대한 본인부담금 반환 관련 안내 드립니다.

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반환금이 있는 요양기관은 **요양기관 정보마당 지급내역서 상 지급구분**이 '채권(양도, 압류 등)'으로 기재되어 있고, **지급일자 +1일**(주말, 휴일 제외)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.

이와 관련한 문의는 **질병관리청 비축물자 관리과**(아래 참조) 또는 **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정산부(채권팀)** (033-736-3390~8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**※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**

전화번호	담당지역
043-719-9156	경기
043-719-9168	대구, 대전, 광주, 제주
043-719-9155	서울, 경남·북, 부산, 인천
043-719-9166	세종, 울산, 전남·북, 충남·북, 강원

**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**